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2.10.19.(수) 조간	배포	2022.10.18.(화)	
담당부서	조사기획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장	고영집 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장	박형근 (02-3145-5582)

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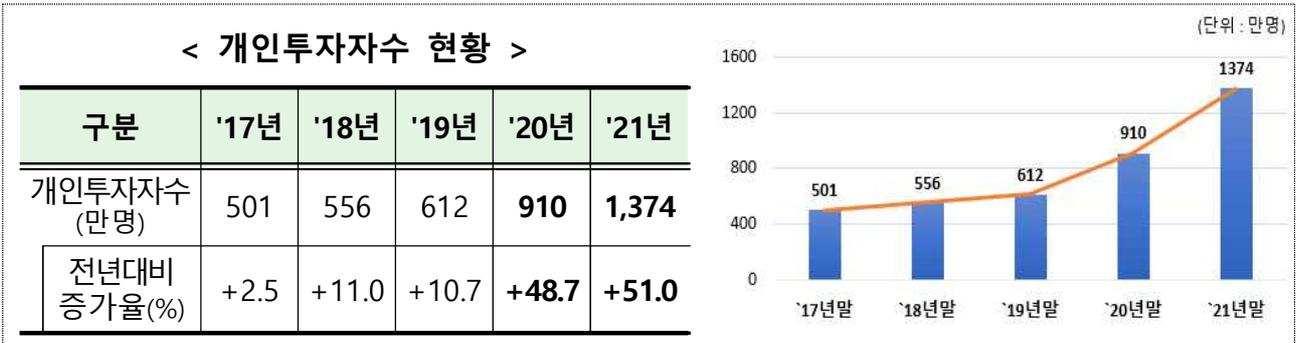
-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 -

주요 내용

- (배경) '21년말 주식 개인투자자수는 1,374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464만명(+51%)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,
 - 최근에는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'주식 리딩방'이 성행하고 있음
- (조사경과)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①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와
 - ②카톡 리딩방, ③유튜브, ④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前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(추정 부당이득 총 200억원 상당) 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 중
- (유의사항)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,
 - 특히,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
- (향후계획 등)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, 플랫폼 사업자가 리딩방 관련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음

1 추진 배경

□ '21년말 개인투자자 수(상장주식)는 1,374만명으로, 전년말(910만명) 대비 464만명(+51%)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.



- 한편, 최근에는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리더가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불특정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'주식 리딩방'이 성행하고 있는데,
 -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,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여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 - 리딩방 참여 투자자의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2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

<선행매매 행태>



1 외부세력과 공모한 불공정거래 행위

- 혐의자(리딩방 운영자)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,
-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하여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

2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

- 혐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

3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 대상 선행매매 행위

- 혐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①선매수 → ②리딩방 회원 매수추천 → ③선매도 → ④회원 매도 추천 패턴 반복 등 선행매매한 혐의

4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행위

- 혐의자는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

👉 리딩방 이용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됨

3 투자자 유의사항

- 개인투자자가 불법 리딩방 이용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①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

-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다량 매수한 뒤, 해당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후 매도
- ➔ 회원들의 물량받기 이후 주가급락으로 투자손실 야기 가능

②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

-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,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
- ➔ 인위적인 주가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동참시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음[자본시장법 제176조]

③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에 유의

-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수·매도를 권유
- 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음 [자본시장법 제174조, 제178조의2]

④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

- 리딩방 운영자의 손실보전, 수익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광고,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에 유의

4 향후 계획 등

-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
 -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·제보를 집중분석하여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어
 -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*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.

* 예시) 플랫폼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,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오픈채팅 사용제한, 주식 리딩방내 유의사항 안내·신고기능 강화 등

<참고>

< 불법 리딩방 등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 >
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
 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
 - 전 화 : 1332
- 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
 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<http://stockwatch.krx.co.kr>)
 - 전 화 : 1577-0088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